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서울중앙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가소○○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구상금
원 고	주식회사 □□□□□보험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19. 12. 12. 원고패소	비 고	
사건개요	○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■■초 3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 ○○○(이하'이 사건 피보험자'이라 함)은 2018. 10. 23. 13:00경 ■■초 급식실 앞 보도길에서 점심식사를 먼저 한 후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달려오던 중, 교실 방향에서 보행하던 소외 ●●●(이하 '피해자'라 함)과 충돌하였고, 피해자는 유치의 탈락, 영구치 아탈구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○ 원고는 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2019. 4. 19.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측에 보험금 2,382,900원을 지급하고, 상법 제682조에 의거하여 보험자대위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음. ○ 이 사고는 피고가 관리 감독하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, 사고 당시 점심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관리, 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, 위 학교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금2,382,900원을 구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		
주 문	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피고는 원고에게 1,73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		
판결이유	○ 이 사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사고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이므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·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		